DELE 시험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서

㈜대교 DELE시험센터와 ooo대학교 스페인어과(이하 "양 기관"이라 한다)는 스페인어 교육 및 학습자 지원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, 교육 및 평가 분야에서의 협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정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정은 양 기관 간의 상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스페인어 교육, 학습자 지원 및 공인시험(DELE 등) 관련 활동을 활성화하고, 향후 공동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 내용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.

1. 스페인어 교육 및 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보 및 자료의 교류
2. 스페인어 공인 시험 DELE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협력
3. 스페인어 학습자 대상 프로모션, 안내 자료 제공 등 공동 협력 활동
4. 양 기관이 추진하는 교육·홍보·행사 활동에 대한 상호 협조
5.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호 협의한 사항

제3조(협력 방법) 양 기관은 교육, 홍보, 자료 제공, 행사 협력 등 상호 협의된 방법을 통해 교류·협력하며,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절차는 협력 내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제4조(비용 및 지원 사항) 본 협정에 따른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, 지원, 혜택 등 제반 사항은 각 협력 사안별로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5조(협정 기간 및 변경) 본 협정은 양 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일로부터 효력이 발행한다. 다만, 협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협력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.

제6조(협정의 성격) 본 협정은 양 기관 간의 상호 협력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사항을 정한 것으로,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, 조건 및 세부 사항은 각 협력 사안별로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.

제7조(기타 사항) 본 협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추가적인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본 협정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정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·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㈜대교 외국어사업본부 본부장
성명: 김민환 (인)
일자: 2026년 3월 일

ooo대학교 스페인어과
성명: (인)
일자: 2026년 2월 일